

기안용지

공고제 17호

분류기호 문서번호	과일 44	(권화번호 75-6376)	권결규정	조	합
처리기간		건설국장	시	장	
시행일자	권결				
보존년한					
보조기관	관리 1과장 보상제장		법무과장 (공고안결재) 시민과장		
기안책임사		양명진 건설 기. 428	조		
정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	통계		
제목	토지 세목공고				
수신	내부결재				
내용	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호 (70.2.31) 로고시 된 소아마비 회관 진입도로 공사에 저촉되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 20조의 취령에 의거 아음공고안이 같이 토지세목공고를 하고 아음각안 시행코자 함이니 등				
	제 2안				
	공고안				

0201-1-8A

3-1

190mm X 268mm 택상지 50% / m²

1969. 11. 10. 승인

(서울특별시립 삼성 직업보도원 인쇄)

정서
관인
발인



서울특별시 공고 제 36호

토지세목 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 36호(1970. 8. 31)로 고시된 다음
 사업지역내에 지목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토지
 수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

법무부장관
 9/1
 회

1. 공사명 : 소아마비 회관 진입도로공사
2. 토지세목 : 별지 3호와 같음
3. 공고기간 : 기. ~ 기.

1971.
 서울특별시장

제 3 호

수신취할지
 토지세목 공고 통지
 1. 소아마비 회관 진입도로공사 구간내에 지목되는
 취락지역내에 지목되는 취락지역의 아래 토지를 수용하고자 토지
 수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였습니다
 통지 합니다.

- 가. 토지세목
 (별지 3호 개인별 이기 시행)
- 나. 공고장소
 시청 계시관
- 다. 공고기간

기. ~ 기. (10일간) 끝

수신취할지. 별지 3호의. 소아마비

수신 제 목 "제 4 단" 장 열 부 광 관
 로 지 세 목 공 고 결 과 보 고
 1. 서울 특별 시 고 시 제 36 호 (20. 8. 31) 로
 고 시 된 아 음 사 업 지 역 내 에 리 측 되 는 로 지 를 수 응
 하 고 자 로 지 수 응 법 제 20 조 의 처 럼 에 의 해 별 첨 라
 갈 이 로 지 세 목 공 고 하 였 기 결 과 보 고 함 니 라 .
 첨 부 1. 로 지 세 목 공 고 사 본 1 부
 2. 로 지 르 더 1 부
 3. 로 지 분 할 측 량 도 사 본 1 부 끝

수신 제 목 "제 5 단" 공 보 실 장 발 신 관 리 1 기 리
 시 보 계 제 으 령
 1. 아 래 사 업 구 간 내 에 리 측 되 는 로 지 를
 수 응 하 고 자 로 지 수 응 법 제 20 조 의 처 럼 에 의 해
 로 지 세 목 공 고 하 였 기 시 보 에 계 제 하 이 주 시 기
 바 람 니 라 .
 가. 사 업 명 : 소 아 미 비 회 관 건 입 도 로 공 사
 첨 부 1. 로 지 세 목 공 고 문 사 본 1 부
 2. 로 지 르 더 1 부 끝